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66
----------	-------

발의연월일 : 2023. 12. 19.

발 의 자 : 이해식 · 강득구 · 김상희
진선미 · 김병욱 · 이수진
서영석 · 이용빈 · 김교홍
김영배 · 이학영 · 허숙정
김승남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교육 지원이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수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별도 학급의 설치·운영 및 한국수어학교의 설립·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28조의2 신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자질향상”을 “자질향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어교육 지원)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수어학교(이하 “한국수어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어교육 제공 및 별도 학급의 설치·운영 등의 지원,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원의 <u>자질향상</u>) ①·② (생 략) <u><신 설></u>	제8조(교원의 <u>자질향상 등</u>)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 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③·④ (생 략) <u><신 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u>제28조의2(청각장애 특수교육대 상자에 대한 수어교육 지원)</u> ① <u>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청각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u> ② <u>교육부장관은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 수어학교(이하 “한국수어학교” 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수어교육 제
공 및 별도 학급의 설치·운영
등의 지원, 제2항에 따른 한국
수어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